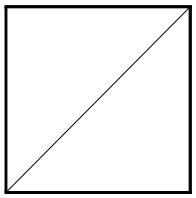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31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5. 13. (제 9 차)

의결사항

㈜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5. 13.

1. 의결주문

㈜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㈜우리카드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(2025.3.10.~2025.4.4. 실시)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가. 약관보고 의무 위반

□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보고 의무를 위반한 ㈜우리카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* : <붙임 2>

* 금융감독원장 조치내용 포함

라. 관계부서 협의 :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(2026.4.30.) 심의필

마. 제9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5.7.) 심의필

<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>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하여 납부토록 함

<별지>

㈜우리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㈜우리카드 : 과태료 12백만원 부과

2. 조치사유 : 약관보고 의무 위반

□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*(금융약관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 보고**하여야 하는데도

* 명칭·형태·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(「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」 제2조 제1호)

** 본건 약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표준약관으로 게시중인 점, '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, 방식,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'가 아닌 점 등 감안시 사후보고 대상

○ 우리카드는 ㉮ 약관 및 ㉯ 약관을 각각 제정(20xx.xx.xx., 20xx.xx.xx.) 한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관련법규>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, 제69조의2
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제19조의22, 제23조의3

<붙임 1>

관계 법규

□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

제54조의3(약관의 개정 등)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,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(이하 "금융약관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⑧ (생 략)

제69조의2(권한의 위탁)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7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

1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□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

제19조의22(약관의 개정 등) ①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(이하 "금융약관"이라 한다)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·방식·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. 다만, 신용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. ~ 3. (생 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.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금융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

2.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

3. ~ 5. (생 략)

제23조의3(업무의 위탁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이 조에서 "금융감독원장"이라 한다)에게 위탁한다.

1. ~ 9의2. (생 략)

10.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,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

10의2. ~ 13. (생 략)

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.

1. ~ 1의2. (생 략)

1의3.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

1의4. ~ 2. (생 략)

③ (생 략)

제2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<별표4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~ 퍼. (생략)		
허.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2호	1,500
고. (생략)		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2.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(1)(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), (2) 또는 마목의 (2), (4)

3.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(1), (2)

4. 위반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3>

과태료 부과기준

1. (생 략)

2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(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

나.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,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·장소적 근접성, 행위의사의 단일성,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산정한다.

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.

마.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·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바.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동기 / 위반결과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
(2) 보 통 : '중대', '경미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
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
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~다. (생략)

4. ~ 6. (생략)

<붙임 2>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우리카드

2. 제재조치일 :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관	과태료 12백만원
임원	퇴직자 위법사실통지 (견책 수준) 2명
직원	자율처리필요사항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고객확인 의무 위반

(1) 카드 발급시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

□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5조의2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*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

* 「금융실명법」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○ 우리카드는 비대면 체크카드(무신용) 발급시스템 구축·운용 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고 휴대폰 인증 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검증하지 않고 생년월일 및 성별에 한정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, 이에 따라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우리카드는 고객 ☆명과 체크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검증하지 않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(2) 법인고객 카드 발급시 대리인의 대리 권한여부 확인 의무 위반

□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5조의2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호,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(이하

‘대리인’이라 함)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과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

○ 우리카드는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법인 고객 ★인의 대리인과 법인 카드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 등을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*이 있음

* 대리인의 명함 또는 법인 주주명부를 첨부

대리인의 대리 권한여부 확인 의무 위반내역

번호	고객명	거래일자	위험등급	위임관계 서류
1	주식회사 A	2021.4.8.	저위험	인감증명서, 주주명부
2	㈜B	2021.9.24.	저위험	인감증명서, 주주명부
3	C	2021.12.9.	저위험	인감증명서, 명함
4	D㈜	2022.5.16.	저위험	인감증명서, 명함
5	㈜E	2022.5.18.	저위험	인감증명서, 주주명부, 명함

<참고사항>

□ 본건은 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5조의2 제1항 위반으로서 동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위반 사실을 旣 통보

※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(2026.3.24.) 결과 : 개인고객 카드 발급시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, 법인고객 카드 발급시 대리권한 확인 의무 위반은 과태료를 면제하되 시정조치 권고

<관련법규>
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5조의2 제1항
「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」 제10조의2 제2항, 제10조의4 제1호
「금융실명법」 제2조 제4호, 제3조 제1항
「금융실명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호

나. 약관보고 의무 위반

□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*(금융약관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 보고**하여야 하는데도

* 명칭·형태·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(「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」 제2조 제1호)

** 본건 약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표준약관으로 게시중인 점, ‘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, 방식,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’가 아닌 점 등 감안시 사후 보고 대상

○ 우리카드는 ㉮ 약관 및 ㉯ 약관을 각각 제정(20xx.xx.xx., 20xx.xx.xx.)한 후 1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관련법규>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, 제69조의2
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제19조의22, 제23조의3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중소금융과	중소금융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991	02-3145-8816